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118900(본소), 2020나118917(반소) 판결
[공사대금 · 건물인도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담당변호사 조준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101966(본소),
2019가단10384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8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10.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2,588,1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자 종합준비서면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본소 청구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는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기각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6~17줄의 ‘천안시’부터 같은 쪽 18줄의 ‘명의로’까지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9줄 이하에 다음을 추가하고, 같은 쪽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1’을 추가한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천안세무서에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2020. 2. 3. 원고에게 공사대금 398,67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9,867,000원과 부가가치세 미신고, 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 19,688,317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자신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으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도급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도급계약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인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39,86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매입세액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의 부담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을 자기의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결국 해당액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적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돈의 흐름 속에서 사업자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법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환급의 일련의 절차 속에서 과세관청을 이용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¹⁾에 따라 결국 그 금액만큼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인 39,86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26.자 종합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위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한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인용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박세진, 판사 강지엽

1)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동 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의 별도의 처분으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발생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37,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되어 결국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금액만큼이 환급된다.